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최 민 지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안전위생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가축의 도살·처리·가공·유통·검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 마련한 「도축장 위생관리 대책」, 「HACCP 활성화 대책」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중이다.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축장의 도축검사 체계를 개선하였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을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은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축 및 그 식육은 소·돼지 등에 비해 검사의 신뢰성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오리 도축장에는 업체 소속 직원인 책임수의사가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 검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도축장에 공무원인 검사관을 파견하여 검

사업무 수행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오리 등 가축에 대한 도축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닭·오리 등 모든 가축에 대하여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도축검사 체계 개선에 맞추어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책임수의사 추가 고용 의무를 유예하였다.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닭·오리 도축장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책임수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검사관으로 대체된다면 책임수의사의 고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2년간 유예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둘째, 도축장에 상주 근무하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작업 중 축산물의 위생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축 검사관에게 작업 일시 중단 명령이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해요소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축장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개정하여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별표 13>을 개정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닭·오리 도축장은 생채검사대의 조명밝기를 220룩스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실내온도가 15°C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현재 HACCP으로 불리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 기준”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를 순화하고,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장 및 농식품부령으로 확대하였으며, HACCP 일괄지정제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은 8월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총리실의 규제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지만,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HACCP 및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한 큰 변화와 개선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의 지정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시키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및 축산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적 집행을 도모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도축검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제2416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발급에 관한 권한을”을 “발급과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4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닭(제3호가목에 따라 닭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업무량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는 3만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